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 03. 01.

개정 2012. 03. 20.

개정 2016. 01. 01.

개정 2016. 1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부천대학교 학칙에 따라 산학연협력 관련 체계적인 지원으로 부천대학교의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에 대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사무소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56번길 25, 부천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산학협력단의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학연협력수요 및 활동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8. 산학연협력사업 및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9.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의 따른 협력 연구소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1. 정부 및 지자체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 및 유아교육 또는 보육에 대한 위탁 관리사업
12.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3.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조직

제5조(이사)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이사를 두며,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이사가 된다.

제6조(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1명의 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천대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임면한다.

② 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대학교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한다.

④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교 총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 단장은 필요시 총장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책수당 및 업무수당 등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구)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직원 및 연구원 등의 채용) ① 단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직원 및 연구원 등을 임용할 수 있으며, 임용기간과 보수 및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대학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 중에서 단장이 필요로 하는 교직원으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단 운영을 위한 규정의 제·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장 재산 및 회계

제12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13조(재산의 구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출연금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증여재산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4. 기타 총장이 정하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제14조(재산관리의 제한) 산학협력단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에는 총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재산의 양도, 증여, 임대, 교환, 포기
2. 예산외 채무의 부담
3. 채권의 포기
4. 기타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15조 (수입)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기본재산의 운용수익
6.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수입금
7. 이자수입 및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8.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9.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10. 기타 산학협력사업에 의한 수입금

제16조 (지출) 산학협력단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 시설 및 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및 기술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대한 경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8.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9.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7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 및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 및 지출원을 둔다.

③ 단장은 수입징수 또는 지출명령에 관한 사무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그 업무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원 및 지출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 및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가 발급되기 전의 직접비에 한하여 개인카드 사용을 인정한다.

제20조(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산학협력단의 결산)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서류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2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1조의 제3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 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 단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교 직원이나 외부 회계법인으로부터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보상금) ① 산학협력단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재원의 성격, 수익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③ 보상금은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25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정관의 변경) 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단장은 정관의 변경사항을 관할법원에 변경 등기하여야 한다.

제27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에 정한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해산한다.

②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부천대학교에 귀속된다.

④ 해산 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제28조(공고) ① 다음의 사항은 공고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산학협력단의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단장이 인정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대학 홈페이지 및 학내 언론매체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준용) 기타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정한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는 2004년 3월 1일로 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 등의 이전)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제1조(효력발생) 이 정관의 효력발생 시기는 2012년 3월 20일로 한다.

제2조(소급적용)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지적재산권 등의 이전) 대학의 장은 이 정관의 효력 발생 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